

第243回国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9號

國會事務處

2003年12月4日(木) 午後2時

議事日程(第19次本會議)

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
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견
2.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
3.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
4.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과견연장동의안
5. 민간보육시설용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
6. 국회이라크현지조사단조사결과보고

附議된案件

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
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견(정부 제출) 1
2.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 11
3.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 11
4.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과견연장동의안 11
5. 민간보육시설용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6. 국회이라크현지조사단조사결과보고 12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5

(14시36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국
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와
관련해서 최근의 국회 파행에 대해서 이유 여하
를 막론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국민에
게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입법부든 행정부든 새로운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입법부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자세가 부족하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국회가

정상화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
고, 나머지 임기 동안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견(정부
제출)

(14시39분)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
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
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
에관한법률안재의의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제1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
이 11월 25일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의 가부를 다시 한번 표결하여 법률로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되고,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재의요구안 이유 설명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문 신청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 토론과 관련하여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의원 의석에서 - 표결과 관련된 것으로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양해를 안 하셨습니다.

(○유시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사람만 주시지요.)

국민이 모두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이 헌법 규정이 생기고 사실상 최초로 결의되는 법안인데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회의가 무척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성호 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만 주세요.)

(장내 소란)

이 안건은 이미 각당 대표들인 총무들과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도 두 사람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것을 합의했는데 이렇게 와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국회 운영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김근태 총무님, 어제 제 방에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기 토론 두 사람으로

하기로 하고 절차를 정한 바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근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한 사람만 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유시민 의원 한 분에 한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유시민 의원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안건과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재의 요청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열흘씩이나 국회를 마비시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표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2004년도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왜 준거요?」 하는 의원 있음)

○議長 朴寬用 빨리 의사진행발언 내용만 말씀하세요.

(장내 소란)

○유시민 의원 그래서 오늘 이 안건 재의에 앞서서……

○議長 朴寬用 가만히 계세요.

○유시민 의원 그동안 국회를 마비시켰던 한나라당은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議長 朴寬用 유 의원!

유시민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유시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議長 朴寬用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어 보시고……

○유시민 의원 저는 오늘 특검법안 재의를 통해서 국회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되기를 원하며, 한나라당에 이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洪思德 원내총무께서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 위에서 국회 정상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표결 결과가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이런 말씀은 도대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까?

모쪼록……

○議長 朴寬用 유시민 의원!

○유시민 의원 예.

○議長 朴寬用 지금 회의를 방해하러 나오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발언을 막겠습니다. 마이크 꺼! 들어가세요.
(마이크 꺼짐)

.....
(○유시민 의원 단하에서 - 오늘 표결 결과가 여하히 나오든 오늘 표결을 계기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
(장내 소란)

○議長 朴寬用 조용히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회의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미 어제 의장실에서 4당 총무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회의 전에 유시민 의원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의에 토론은 보장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좀 양보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의 내용도 그런 얘기를 해서 회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직권으로 마이크를 끈 데 대해서 유시민 의원 개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정 의원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임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밝혀져야 할 진실은 감추면서 측근비리 특검이라는 선동적 음모만이 횡행하는 의사당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특검법안을 두고 벌이고 있는 웃지 못할 정치행위야말로 앞으로 한국 정치를 더욱 폐쇄시키는 요인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검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밝혀야 할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비리는 덮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비리를 정략적으로 농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혐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국회를 지배하던 군사독

재하의 국회 운영이 형태만 바뀌었지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47석의 소수 여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의 장애물은 개혁에 대한 소외 세력의 존재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여 준 민주 세력의 무능력에 있다는 지적을 오늘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의 범리상 문제점은 이미 대한변협을 비롯한 각계에서 누차에 걸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첫째,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또는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까지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자민련과 함께 무리한 재의결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가 검찰권 행사를 특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방해하고 야당이 국가 검찰권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에 다름이 아닙니다. 무서운 정치적인 함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 종결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국민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인정했던 한나라당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고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비리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의도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대입해서 정부와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계략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 법안의 수사 대상 규정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측”, “선언문그룹 측”, “최도술이 SK그룹 등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 등 불명확한 개념과 용어가 전반적으로 사용되어 형사법률로서의 명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법률입안 능력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라면 이는 투망질하듯 상상적 비리를 모두 망라하여 오직 특검정국으로 이 나라 정국을 파탄시키려는 음험한 정략에 다름 아닙니다. 증권가 정보지의 뜬소문을 근거로 법안을 만드는 만용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수사기간 연장 및 특별검사 해임 제한 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거에 제출되었던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30일간 연장이 가능했던 데 반해,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기만 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특검의 판단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해임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직무상 과오 또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별검사의 월권을 견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특검의 근본취지, 즉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은 그들의 당리당략 변화라는 변칙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원칙을 서슴없이 파괴하고 있는 어이없는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이 겸허히 수용하고 그것에 응답할 때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한국의 정치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는 또한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 측근비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있다면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한 점도 남김없이 수사해서 모두 밝혀야만 합니다. 아울러 대선자금 수수의혹을 포함한 정치권을 배회하는 돈과 관련된 모든 비리에 대해서도 낱알이 밝혀야만 합니다. 정치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음습한 분위기를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맑고 청정하게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적 부채는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오늘 조성된 음모적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즉 특검 재의는 반드시 부결되어야만 합니다. 검찰의 수사 종결 후 그 모든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검찰의 시간 끝기가 불안하다면 기간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정치권의 결의도 이 자리에서 천명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장막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 의지의 표현으로 다만 며칠이라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을 것을 결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오늘날 정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했다는 국민적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자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무릇 자신의 행위결정의 준거를 사회정의에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의사당 내에서의 정치행위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비리집단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토록 소중한 기회를 정치적 흥정으로 무산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의회권력의 전횡과 음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정도이며 총선에서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암암리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모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한나라당 총무의 말은 이것이 정말

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경악을 넘어서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을 할 용기가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중대한 협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요 모독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16대 국회가 여전히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임하고자 한다면 오늘 특검법 재의는 당연히 부결되어야만 합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한나라당의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화와 법치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테마이고 계속 발전되고 심화되어야만 할 우리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억지가 순리를 꺾박하고 승리하는 일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빚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특검법 재의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호소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崔炳國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6년간 검찰에 봉직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검찰을 배제하고 특검을 요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측근비리 사건은 그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검찰보다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로마 시민 앞에서 “내가 시저를 죽인 것은 시저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던 브루투스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부패에 연루된 정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형, 집사, 비서, 운전사, 친구, 선후배, 지인, 선대위 위원장, 선대위 총무부장 등등의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 뇌물 공여, 조세 포탈,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정말 비리 인물이나 비리 죄목을 다 열거하기에는 가슴이 가빠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들

대통령 주위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함으로써 대통령이 비리사건에서 벗어나서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병폐였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와 고비용 저효율의 낡은 정치를 개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국민 염원을 받들어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184명 의원이 찬성해서 대통령 측근비리 중 분명하고 핵심적인 3개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1월 25일 자신의 측근비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는 우리 헌법의 이념인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고, 헌정사상 초유의 복마전 같은 대통령 측근비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반민주·반국민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특검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을, 대통령 자신이나 측근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그 공약을 뒤집는 대국민 기만행위라고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비리는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행정조직이나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 행정수반으로서 자신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연루된 그의 측근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내지 어려운 것이므로 특검이 마땅히 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검찰은 이들 사건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의 비리의혹사건은 그가 전 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부산 지역 후원회장이었던 이영로 씨와 함께 정치자금으로 수백억 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것이었는데 지난 10

월 초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은 눈앞이 캄캄하다 하면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신임 요구도 하겠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검이 거론된 후에야 비로소 SK로부터 수수한 11억 원에 대해서만 개인 비리 차원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또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광재의 비리의혹 사건은 썬앤문이 그를 통해서 盧武鉉 후보 측에 95억 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난 10월경에 제기되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거절하고 있다가 어제야 비로소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 비리의혹 사건은 그가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 등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사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월경 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수사하려고 했던 김모 검사를 몰래카메라 사건이니 개인 비리니 등으로 도리어 구속하는 등 본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검법이 논의되니까 이제 수사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는 면죄용이거나 또는 특검의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무색투명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측근비리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대통령 스스로 동업자라고 칭했던 안희정 씨의 나라중금으로부터 받은 돈 2억 원에 대해서는 생수회사 투자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통령이라고까지 지칭되고 있는 강금원 씨 사건에 대해서도 단순히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하고 탈세한 개인 비리 사건으로 수사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 데 비추어 보면 최도술, 양길승, 이광재 등의 사건도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쉽게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의 요구의 이유로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거나 검찰 수사권을 보호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법률안을 다수당의 횡포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유권자의 불과 2% 차로 당선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횡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진정한 이유는 특검을 통해서 측근비리가 밝혀지고 대통령 자신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법적·정치적 책임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특검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盧 대통령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의혹들인데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종결되고 의혹이 남으면 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에 부할 수 없다 하는 정신에도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의 경우 곧바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8년간의 재임 기간 중 37회의 거부권 행사를 하였지만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盧 대통령이 자신이 직간접으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도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밝은 정의는 공평한 데서 생깁니다.

우리는 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SK 수사에서 보듯이 야당 관련 사건은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그보다 더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선자금 수사에는 우리 야당이 관련되어 있기에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데 우리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라도 받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측근비리 사건은 특검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검찰을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검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또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사라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선 밝은 사회를 이룩해 나가도록 합시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김성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출발부터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법안이었습니다. 일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뭐가 급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서둘러 특검법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희석시키고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전략 차원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략적 야합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정치특검이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특검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에서 정말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측근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총선용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또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문제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일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야 3당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함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제출할 수는 없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야당의 발언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대통령 측근 최도술 씨가 SK로부터 11억 원을 수뢰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 실세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다” 하는 극찬과 함께 “검찰을 신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켜보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15일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3당의 원내총무가 회동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합의도 또 했습니다.

국민들은 야 3당의 태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검은 바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또 국민적 의혹이 남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2일 한나라당 한 의원의 SK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00억 수수 사실이 밝혀지자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한나라당 대표께서는 다음날인 23일 宋光洙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지 말라며 한나라당의 SK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에까지 간섭을 시도했습니다. 언론에 명백하게 이러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26일, 며칠 전 이미 3당의 총무회담에서 합의했던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특검을 요구했으며, 10월 31일에 측근비리 의혹에 관한 3개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왜 검찰을 극찬하다가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까? 검찰 수사 뒤에 특검을 하겠다던 야 3당의 합의를 무시하면서 서둘러 특검법을 제출해야 할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10월 22일 한나라당의 SK 불법 대선자금 100억 수수 사실 수사를 기점으로 전과 후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선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대선자금 정국을 측근비리 의혹 특검 정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盧武鉉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받겠다며 조건부 찬성의 입장

을 밝히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반 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에는 특검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것으로 특검법은 법으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은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을 포기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해 국회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 열흘 동안 국회는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음으로써 일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는 바로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고 대신 대선자금 관련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 방탄특검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국회에 등원한 것은 또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까 냉정하게 특별검사제의 취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로지 진실 규명만을 위해 특검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검찰의 수사권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측근비리 특검법을 추진할 때부터 특검을 수용하겠으니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보충적인 제도입니다. 한나라당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의 이러한 보충성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검찰권을 부정하여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부 개입 의혹이 있었던 옷로비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특검

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곧바로 특검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권력 핵심부 개입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으로 추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특검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첫째 검찰의 중립성이 현저히 의심될 경우, 둘째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셋째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측근인 최도술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는 강금원 씨가 구속되는 등 대통령 측근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중립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전례없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에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평가가 아닙니다.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에는 검찰 수뇌부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국민적인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盧武鉉 대통령 출범 이후 검찰 독립이 철저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지기 10일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미진한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SK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저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지난달 12일 한나라당의 전 총장께서는 예정되었던 검찰 출두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공정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또 수사 대상이 수사를 거부하여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바로 이럴 때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검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수당의 압력에 의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이 부당하게 행정권을 통제하는 것이 되어 검찰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입법을 통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말 그대로 수사 대상이 수사권을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근에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특검을 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또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우리 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의 본래 취지대로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오직 진실 규명을 위한 수단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검을 다수당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기본자세입니다.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우리 당이 먼저 앞장서서 특검을 제출할 것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 다수당의 정략에 기인한 부당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수당이 멋대로 검찰 수사를 종결시키고 입맛에 맞는 특검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권이 검찰권을 견제하는 격이 되어서 검찰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던 독재시대로 후퇴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정략적 특검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먼저 검찰 독립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이 국민에게 설득을 얻기 위해서도 우선 한나라당이 관련되어 있는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입니다.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국민과 국회가 특검 수사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이번

특검은 대선자금 문제를 덮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먼저 철회하거나 안 되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철회하거나 국회에서 부결시킨 다음에 일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당과 야3당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梁承富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梁承富 議員 새천년민주당의 梁承富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등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발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과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적시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崔炳國 선배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의견 견해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온 국민과 이 나라 역사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재의에 대해서 찬성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당론을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앞에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번 특검법 의결 시 재의결 정족수인 182석을 뛰어넘은 184석의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재의결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12월 3일 중앙일보가 재의결 찬성 여론이 56.2%라는 것을 발표했고, MBC와 코리아리서치에서는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56.8%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자 984명을 대상으로 한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측근비리 의혹 특검에 대해서 58.3%가 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의결 시 이미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넘는 184명이 찬성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검찰에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만한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특검법 재의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리다리가 짧다고 늘리려 하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줄이려 하지 말라는 속설과 같이 우리는 순리를 따라야 되고 순리에 따라서 국민여론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적 당위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막후에서 공조해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자 국민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한 데 따른 것임을 거듭 밝히고자 합니다.

또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서도 특검법 재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검법 재의결로 측근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盧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국은 특검법 문제로 혼란과 국민적 분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 누가 되는 분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검법 재의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성일 의원, 金容鈞 의원, 오경훈 의원, 崔炳國 의원, 趙在煥 의원, 黃昌柱 의원, 유시민 의원, 강숙자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 수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지난 11월 10일 제1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5시30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寬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44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66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6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수와 명패수가 266매로 같습니다. 아마 260매로 잘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266매입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6표 중 가 209표, 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

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178인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의에 의해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헌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최초의 재의라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 3.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 4.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15시54분)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代理 朴世煥 국방위원회 朴世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그리고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동의안은 2003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아프간 및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연장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대상 부대는 아프간 파견 2개 부대(건설공병대지원단, 의료지원단) 그리고 이라크 파견 2개 부대(건설공병지원단, 의료지원단)입니다.

둘째, 파견부대의 임무는 건설공병지원단은 미군 및 동맹군의 기지 운용 지원 및 인도적 차원의 대민 지원이고 의료지원단은 미군 및 동맹군에 대한 진료와 인도적 구호활동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5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방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동의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네요.

金容鈞 의원 빨리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5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과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5인, 기권 6인으로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과견연장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민간보육시설용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0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5항 민간보육시설용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명섭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의원입니다.

2003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202-12 한솔어린이집 박청자 외 20인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민간보육시설용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용자금 상환의 곤란으로 인하여 도산·경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환기한 연장 등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심도 깊은 심사에 이어 2003년 11월 24일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전체 보육의 74.7%를 담당하게 된 민간 보육시설들이 용자금 상환 곤란으로 경매처분 등을 계속 겪고 있으며,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방지할 경우 그동안 구축해 온 보육시설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의 용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간보육시설용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용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 만장일치로 민간보육시설용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국회이라크현지조사단조사결과보고

(16시0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이라크현지조사단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부가 국회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서 독자적인 조사단을 파견해서 심의자료로 삼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국회의원 4인과 전문위원, 민간인 두 사람을 합한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피격을 당하는 등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획에 차질 없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셨는데 조사단장으로 수고하신 姜昌熙 의원, 韓忠洙 의원, 송영길 의원, 鄭鎭碩 의원, 네 분 의원에게 의장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姜昌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會이라크現地調査團長 姜昌熙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이라크현지조사단장 한나라당 姜昌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이라크의 티크리트 고속도로에서 테러공격을 받고 돌아가신 두 분의 우리 기업인과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국회이라크현지조사단은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염려 덕분에 조사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난 2일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예상치 못했던 로켓탄 공격을 당한 조사단의 안부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조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조사단원께 단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조사가 시간적·물리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일정과 제한된 인원으로 다양한 인종, 종교, 정파로 구성된 이라크의 복잡한 사정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이동과 다양한 만남을 허용하지 않는 치안 상태와 높은 언어 장벽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창으로 넓은 들판의 곡식을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창이라도 곡식이 자라고 익는 것만은 살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라크를 향한 작은 창을 만드는 심정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조사활동을 했

습니다.

국회이라크현지조사단은 네 분의 국회의원과 두 분의 민간 전문가 그리고 네 분의 실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주당의 韓忠洙 의원님,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님, 자민련의 鄭鎭碩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각당의 대표로 참여하였고, 중동·아프리카연구원의 유정열 이사장님, 국방연구원의 전경만 박사님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김대훈 국방수석전문위원, 서덕교 입법조사관, 외교통상부 김종용 심의관, 국방부 이재현 대령이 실무지원반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출발에 앞서 현지의 치안 악화로 조사단의 출발을 늦추거나 취소하라는 외부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 젊은이도 보낼 수 없다는 조사단원의 확고한 결의로 지난 11월 18일 차질 없이 출발하였습니다.

조사단은 11월 18일에서 11월 26일까지 8박9일 동안 나시리야, 나자프, 바그다드, 키르쿠크, 모술, 카야라 등 주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서희·제마부대, 연합임시행정처, 동맹군 사령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등 현지 작전부대와 공식 기구를 방문하고, 부족장, 종교 지도자, 대학교수, 기업인, 현지 교민 등 약 20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사일정 중 테러조직에 의해 로켓탄 공격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현지 시간 아침 7시 15분경 조사단이 머물던 바그다드 팔레스타인 호텔이 로켓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테러조직은 총 16발의 로켓탄을 다연장식으로 수동제작하여 전기충격식으로 발사하였으며, 그 중 네 발이 팔레스타인 호텔에 명중하고, 나머지 한 발은 인근 웨라톤 호텔에 맞았습니다.

팔레스타인 호텔에 명중된 네 발 중의 한 발은 우리 국방부 관계자가 묵고 있던 바로 옆 방인 1211호실에서 폭발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열한 발은 전기뇌관의 고장으로 발사되지 않았으나, 만일 그 열한 발마저 발사되었다면 조사단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로켓탄 공격이 우리 국회조사단을 겨냥한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있었지만 외신기자, 외국 기업,

외국 대사관이 다수 묵고 있는 호텔에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의 철수를 요구하는 경고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우리 조사단만을 겨냥한 테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15일 연합임시행정처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이라크의 주권이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라크 군·경 육성작업을 서두르는 등 동맹군이 직접 담당하던 치안 및 행정 업무를 점차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전후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후복구사업의 가장 큰 장애는 역시 치안불안과 예산 및 물자의 부족이었습니다.

치안상황과 관련하여 바드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수니삼각지역의 정치적 테러가 급증하고, 특히 미군 부대 등 하드 타겟(hard target)에 대한 공격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에 협조하는 이라크 주요 인사, 국제기구, 외국 대사관, NGO 등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 대한 테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조사단이 투숙한 팔레스타인 호텔에 대한 로켓탄 공격과 최근 발생한 일본 외교관, 스페인 정보장교, 한국 민간인 피살사건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테러조직의 목표는 동맹군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안정화와 재건작업을 무산시키고 동맹군의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부와 북부 등 기타 지역의 민생치안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현지 이라크인들을 만난 결과 대부분의 이라크 국민들이 후세인 정권에서 해방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었으며, 또다시 후세인 정권이 복귀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활동이 지속되는 이유는, 실업 등 전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강도 약탈 등 치안불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며, 문화적·종교적 차이를 무시한 초기 강압적 치안유지작전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안 위협 세력은 후세인 잔당, 종교적 과격분자, 해외에서 유입된 테러분자 등입니다.

중전 직후에는 2~3명이 소규모 비조직적 활동을 했고, 장비와 재원도 열악했던 테러조직들이

최근 조직적인 지휘체계와 강화된 무기체계를 갖추고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후세인 정권 붕괴 시 증발된 10억 달러가 테러조직 자금으로 유입되는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후세인 정권 시 10~15만 명에 달하는 죄수를 방면하고, 전후 30~40만 명에 달하는 구이라크군을 무기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한 것도 치안불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단은 민생악화가 치안악화를 불러오고 치안악화가 다시 민생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이라크 안정화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인들은 외국군의 파병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치안을 맡아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지만, 자체 치안유지가 가능할 때까지는 동맹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맹군은 치안 확보가 없이는 재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치안유지부대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라크인들이 한국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조사단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라크인들은 1차 걸프전 당시 우리 건설회사들이 전쟁 기간에도 철수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으며, 한국의 제품이 대단히 좋고, 한국이 이라크에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매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같은 동양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월드컵 등 각종 스포츠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해 깊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의 파병을 터키 등 주변국의 파병과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추가파병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갖고 특정지역을 맡아 치안유지와 재건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혼성군의 파병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파병지역을 먼저 선택해야만 치안·재건 수요를 판단할 수 있고 규모와 성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이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로 이라크인을 돕고 주권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다는 것을 이라크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넷째, 군수조달의 재원 및 보급로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적·종교적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부족장 및 종교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소통과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해 아랍어에 능통한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라크인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교육열을 가진 우수한 국민입니다. 우리처럼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생각하는 따뜻한 국민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세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라크인을 진심으로 돕는다면 머지않아 풍요로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조사단은 전쟁의 참상과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인을 보면서 마치 50여 년 전 우리 국민이 겪었던 고통과 좌절을 보는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사단은 시름에 빠진 이라크인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 추가파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파병부대의 성격은 이라크인의 수요에 맞추어 치안유지와 재건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다기능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라크의 통치권을 미국에서 유엔으로 이관해야 하며, 평화재건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朴寬用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내일을 보는 밝은 눈과 세계를 생각하는 넓은 가슴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파병 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현지 정세와 동떨어진 전투병·비전투병의 이분법적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병부대의 성격, 규모, 시기, 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파병을 결정한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국익에 부합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이 안

심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파병동의안의 가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역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이라크현지조사단의 보고서가 각 당의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의 판단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추가파병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단의 활동에 보내 주신 朴寬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라크 현지 조사에 협조해 주신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조사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이라크의 많은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이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 노고에 보답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조사단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몇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 휴회의건(의장 제의)

(16시24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0차 본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참 조)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안 이유설명**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정부로 이송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공포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시 국회 여러 정당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민에게 걱정을 드려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정신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특별검사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부에 속하는 수사권의 발동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과거 세 차례의 특검법 제정 시에도 검찰이 수사권 발동을 포기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권력분립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대상이나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을 보면 특검의 보충적 성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관련 의혹과 양길승 전 부속실장 비리 의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네 차례의 특검 사례는 모두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였거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사건이라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도 형성되었으나 이번 특검법안과 같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없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례가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검찰의 수사·소추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이원화되어 권력분립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의 주된 수사 대상은 결국 대통령 측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므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조사 대상 기업·관련자나 압수·수색 계좌 등이 중복될 수도 있어 관련 기업 및 당사자들의 불편과 인권 침해는 물론 수사력의 낭비도 우려됩니다.

둘째, 형사법률로서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 규정을 보면 “최도술이 SK그룹 등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사건”(법률안 제2조제1호), “노무현대통령 측”, “썬앤문 그룹 측”(법률안 제2조제2호) 등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어 수사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칫 특별검사의 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셋째, 수사 기간 연장 및 특별검사 해임 제한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안 제9조는 과거 3건의 특검법과 달리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검사의 의도적 수사 지연이나 권한 남용 또는 일탈을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봉쇄한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안 제14조는 특별검사의 해임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특별검사에게 직무상의 과오 또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별검사의 월권을 견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공포·시행될 경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중단되어 오히려 진상 규명 지연, 검찰 사기 저하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우려되므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국무총리 고 건

.....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투표의원(222인)

찬성의원(218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속 자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윤 식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회 선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욱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응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창 달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정 화
설 송 응	설 훈 석	손 회 정	송 광 호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영 균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안 경 립	안 대 립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규	유 한 열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중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한 구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재 식	장 태 완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정 무	조 한 천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회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현 승 일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3인)

김 경 천 김 영 환 송 석 찬

기권의원(1인)

서 상 섭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투표의원(221인)

찬성의원(215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속 자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회 선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창달
박현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정화
설송웅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영길	송훈석	신경식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영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천용택	천정배	최명현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5인)

김경천	김영환	김원웅	박승국
송석찬			

기권의원(1인)

서상섭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투표의원(222인)

찬성의원(201인)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환	김원길	김윤식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김희선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창달	박현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정화	설송웅	손희정	송훈석
신경식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규	유한열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협	이호웅
이훈평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정갑윤	정동영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헌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중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현 승 일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15인)

김 경 천 김 락 기 김 영 환 김 원 응
 김 홍 신 박 인 상 서 상 섭 설 훈
 송 광 호 송 석 찬 유 시 민 이 희 규
 전 재 희 조 성 준 조 한 천

기권의원(6인)

김 경 재 김 근 태 김 충 조 송 영 길
 이 승 철 장 성 원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영 균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안 경 료 안 대 료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규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윤 수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협 이 호 응
 이 희 규 임 종 석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영 달 장 재 식 장 태 완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헌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중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현 승 일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민간보육시설옹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

투표의원(212인)

찬성의원(212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홍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문 수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윤 식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중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흥 신
 김 희 선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희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인 상 박 재 옥
 박 중 근 박 중 완 박 중 우 박 중 응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윤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설 송 응 손 회 정 송 광 호 송 석 찬

○出席議員(266人)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姜 雲 太 姜 仁 燮 姜 昌 熙 姜 昌 成
 姜 昌 熙 高 珍 富 高 興 吉 具 鍾 泰
 權 琪 述 權 英 世 權 五 乙 權 哲 賢
 權 泰 望 金 景 梓 金 敬 天 金 光 元
 김 근 태 金 杞 培 김 기 재 金 淇 春
 김 덕 규 金 德 龍 김 덕 배 金 東 旭
 김 락 기 金 萬 濟 김 명 섭 金 武 星
 金 文 洙 金 芳 林 金 秉 浩 김 부 겸
 김 상 현 金 聖 順 김 성 조 金 成 浩
 金 映 宣 金 榮 駟 김 영 환 金 玉 斗
 金 容 甲 金 容 鈞 金 龍 學 金 龍 煥
 김 원 기 金 元 吉 김 원 응 金 允 式
 김 일 윤 金 政 夫 김 정 숙 金 鍾 泌

金鍾河 金宗鎬 金鎮載 金燦于
 金忠兆 金台植 金대홍 金택기
 金鶴松 金學元 金형오 金홍신
 김홍일 金晃植 金孝錫 金희선
 나오연 南경필 南궁석 都鍾伊
 孟亨奎 朴요상 朴明煥 朴봉기
 朴寬用 朴權惠 朴相千 朴병석
 박병윤 朴상규 朴相千 朴相熙
 朴世煥 朴承國 朴시균 朴源弘
 朴仁相 朴在旭 朴鍾根 朴鍾浣
 朴宗雨 朴鍾雄 朴중희 朴柱宣
 朴柱千 朴진진 朴창달 朴憲基
 박혁규 朴熺太 裴기선 裴奇雲
 白承弘 서병수 薛상섭 徐廷和
 徐淸源 설송웅 薛勳 孫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辛卿植 신계륜 新기남
 申榮國 申榮均 申현대 申규철
 沈載權 沈재철 安경률 安대륜
 安東善 安商守 安相賢 安영근
 안택수 安承富 梁正圭 嚴虎聲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元裕哲
 원희룡 유시민 劉容泰 柳在珪
 柳漢烈 柳興洙 윤경식 윤두환
 尹汝雋 尹榮卓 尹鐵相 尹漢道
 李康斗 李강래 李敬在 李규택
 李根鎭 李낙연 李萬燮 李方鎬
 이병석 李부영 李상득 李相培
 이상수 李祥義 李성현 李승철
 李良熙 李嬾淑 李完九 李龍三
 이우재 李元昌 李원형 李允盛
 李允洙 李仁基 李인제 李在善
 李在五 李在昌 李正一 李중걸
 李柱榮 李창복 李漢久 李漢東
 李海龜 李해봉 李해찬 李協
 이호웅 李訓平 이희규 林仁培
 임종석 林鎭出 임채정 任太熙
 張光根 張誠源 張영달 張在植
 張泰玩 全甲吉 田塔源 田용학
 전재희 鄭갑운 鄭均桓 鄭대철
 정동영 鄭동채 鄭문화 鄭범구
 정병국 鄭세균 鄭宇澤 鄭의화
 정장선 鄭鎭碩 鄭창화 鄭哲基
 鄭亨根 曹배숙 趙富英 趙성준
 趙舜衡 曹雄奎 趙在煥 趙정무

趙漢天 曹喜旭 朱鎮盱 趙용택
 천정배 崔燉雄 崔明憲 崔炳國
 崔秉烈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최용규 최재승 秋美愛 河舜鳳
 韓昇洙 韓忠洙 韓和甲 咸錫宰
 咸承熙 許泰烈 玄敬大 玄勝一
 홍문중 洪思德 洪재형 洪準杓
 황우여 黃昌柱

○出張議員(1人)

유재건

○請暇議員(3人)

金雲龍 이원성 정몽준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무총리 高建
 법무부장관 康錦實
 국방부장관 曹永吉

【報告事項】

○特別委員長職務代理指定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송광호
 11월27일 (5일간)
 12월 1일
 (11월21일자)

○幹事選任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정치개혁 특별	이경재	한나라당

(11월21일)

○議案提出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민봉기 의원 발의)
 (11월21일 민봉기 의원 외 10인 발의)
 11월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放送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
 (11월21일 정범구 의원 외 12인 발의)
 11월2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11월21일 이재창·이재선·이상배·이성현·
 이희규·유한열·윤한도·송훈석·서정화·
 임진출·권기술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11월21일 이재창·권기술·박주선·임진출·
 서정화·송훈석·윤한도·유한열·이희규·
 이성현·이상배·이재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11월22일 정부 제출)

11월2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疑問死真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

(11월22일 오세훈 · 권태망 · 김무성 · 정의화 · 홍문중 · 이원창 · 원유철 · 이재선 · 임인배 · 정문화 · 이원형 · 이재오 · 이근진 · 권철현 · 박혁규 · 정병국 · 전재희 · 신현태 · 이승철 · 윤경식 · 서병수 · 김성조 · 김문수 · 이주영 · 서상섭 · 남경필 · 김옥두 · 설훈 · 김운용 · 김홍일 · 이낙연 · 이정일 · 이희규 · 전갑길 · 김효석 · 조성준 · 이훈평 · 고진부 · 조한천 · 이용삼 · 정범구 · 정철기 · 추미애 · 강운태 · 이창복 · 이부영 · 김성호 · 송영길 · 정동영 · 유재건 · 김희선 · 김원웅 · 김부겸 · 유시민 · 장영달 · 김근태 · 임종석 · 안영근 · 김원기 · 김영춘 · 신기남 의원 발의)

11월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自然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11월24일 김정부 · 정병국 · 나오연 · 안택수 · 강봉균 · 김효석 · 송광호 · 서병수 · 이규택 · 김황식 의원 발의)

11월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11월24일 이재선 · 박시균 · 이원형 · 김성순 · 김명섭 · 김용갑 · 장광근 · 오장섭 · 김원웅 · 강창희 · 김부겸 · 최병국 · 김학송 · 김정숙 · 박승국 · 이재오 · 이연숙 · 이용삼 · 장성원 · 이양희 · 신경식 · 이원성 · 이낙연 · 원유철 · 송석찬 · 이재창 · 김충조 · 안상수 · 송영진 · 김효석 · 윤경식 · 임인배 · 이인기 · 김찬우 · 박종웅 · 정의화 의원 발의)

11월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自由貿易地域의지정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11월24일 정부 제출)

11월25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賞勳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11월24일 송석찬 · 김희선 · 김명섭 · 이창복 · 이훈평 · 정철기 · 이용삼 · 김홍일 · 이호웅 · 남궁석 · 유재규 · 이정일 · 전갑길 · 이재선 의원 발의)

國葬 · 國民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11월24일 송석찬 · 김희선 · 김명섭 · 이창복 · 이훈평 · 정철기 · 이용삼 · 이호웅 · 남궁석 · 유재규 · 이정일 · 전갑길 · 이재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11월24일 송석찬 · 김희선 · 김명섭 · 이창복 · 이훈평 · 정철기 · 이용삼 · 김홍일 · 이호웅 · 남궁석 · 유재규 · 이정일 · 전갑길 · 이재선 의원 발의)

11월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檢疫法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

(11월24일 김명섭 · 이원형 · 남경필 · 김찬우 · 조성준 · 임채정 · 박시균 · 유시민 · 김홍신 · 이재선 의원 발의)

11월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과수산업진흥특별법안(고진부 의원 발의)

(11월26일 고진부 의원 외 30인 발의)

11월2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檢事の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11월27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11월27일 이원형 · 임인배 · 이인기 · 고흥길 · 조용규 · 전용원 · 강재섭 · 안상수 · 윤영탁 · 권기술 · 박시균 · 남경필 의원 발의)

11월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광주민주화운동관련행방불명전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11월28일 전갑길 · 정철기 · 이희규 · 이낙연 · 김경천 · 강운태 · 김상현 · 최선영 · 김경재 · 김태홍 · 신경식 · 이훈평 · 김옥두 · 김충조 · 정우택 · 이강래 의원 발의)

11월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12월1일 천정배 · 김태홍 · 신기남 · 남궁석 · 조배숙 · 이강래 · 배기운 · 김희선 · 정세균 · 김부겸 · 이창복 · 이부영 · 임종석 · 유시민 · 정동영 · 김홍신 · 정대철 · 정장선 의원 발의)

12월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12월4일 의장 제의)

12월5일
12월6일 (2일간)

○議案審査

-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 국군건설공병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장동의안
-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연장동의안
(이상 3건 11월1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의결)
이상 3건 국방위원장 보고

○議案撤回

- 放送法中改正法律案(정범구 의원 발의)
(11월17일 정범구 의원 외 14인 발의)
11월21일 발의자 철회요구

○再議要求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
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
관한법률안(김용균 의원 발의)
(10월31일 김용균 의원 외 147인 발의)
11월25일 대통령 환부

○請願提出

- 단기임대주택의장기임대주택전환에관한청원
(2003년11월21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43-7 향군회관 2층 김서용 외 690인으로부터
김홍신·유시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정관련공청회개최에관한청원
(2003년11월2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120-1 조성렬 외 5인으로부터 엄호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 소형주택의무비율확대에의적용에관한청원
(2003년11월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18-1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영득 외 4인으로부터 박원홍 의원
의 소개로 제출)
11월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1월25일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46-
36 설악동번영회 회장 하상석 외 32인으로부터
송훈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 법무부직원숙소건립반대에관한청원
(2003년11월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
동 3가 94 현대홈타운 107-102 오용만 외

4546인으로부터 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울지방병무청문래동이전반대에관한청원

(2003년11월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
동 3가 94 현대홈타운 107-102 오용만 외
4546인으로부터 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2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아파트에대한공공기관의압류해제에관한청원

(2003년12월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717-1 청구아파트 102-804 하단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 이광익으로부터 엄호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2월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9-3 대한약사회 회장 한석원으로부터 김
명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請願審査

민간보육시설융자금상환기한연장등에관한청원

(2003년9월29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202-
12 한솔어린이집 박청자 외 20인으로부터 김
명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국유지사용료및변상금감면등에관한청원

(2001년4월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3
동 3-83 12통 8만 김영열 외 669인으로부터
이성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부가가치세법개정에관한청원

(2001년10월29일 서울 강북구 번1동 410-22
이순화 외 2134인으로부터 한화갑 의원 외 8
인의 소개로 제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3년1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로부터
서상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동주택경비용역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청원

(2003년3월26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1804호 김수길 외 136인으로부터
정동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4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書面質問書提出

독립선열중의사·열사개념정립에관한질문서

(11월21일 김원웅 의원 제출)

11월22일 정부에 이송

등기소건립에관한질문서

(11월24일 김성조 의원 제출)

11월24일 정부에 이송

이공계전공자공직진출확대방안에관한질문서(20건)

(11월25일 정갑윤 의원 제출)

11월26일 정부에 이송

○**書面答辯書提出**

무건리훈련장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해군성당건립예산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11월24일 정부 제출)

의료기기기준규격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1월26일 정부 제출)

고속철김천·구미역사건립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고속철도정차역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11월29일 정부 제출)

독립선열중의사·열사의개념정립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2월1일 정부 제출)

이공계전공자공직진출확대방안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2월3일 정부 제출)

(이상 7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공적자금운용현황보고서

(11월26일 정부 제출)

11월2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2003년도환경보전시책추진상황보고서

(12월3일 정부 제출)

12월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